모의고사 지문 분석

부록

2023학년도 시즌4 제5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4~9] 인문 통합

공리주의의 수정과 동양 철학에서의 공리주의적 양상

지문 평가

공리주의라는 중심 화제를 매개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한데 설명하는 전형적인 인문 통합 지문이다. (가)는 공리주의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리주의를 보완해 온 일련의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나)는 동양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리주의적 성격을 조명하고 있다.

Keyword

(가) 인문 – 서양 철학 – 공리주의
결과주의,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아마르티아 센, 행위자 상대적 공리주의, 행위자 중립성, 행위자 상대성
(나) 인문 – 동양 철학 – 묵자, 맹자
묵자, 겸애, 교리, 맹자, 서, 측은지심, 예

(가) 문단 1 공리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

1) **결과주의**는 행위의 동기나 행위 자체에서 옳고 그름을 찾지 않고, 행위의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행위의 옳음을 평가하는 윤리관이다. '모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하라.'라는 **공리주의**가 그 대표적인 입장이다.

➡ '결과주의'는 오로지 그 행위로 인한 결과가 좋은지만 고려한다. 어떤 행위였고 그 행위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 '공리주의'는 어떤 행위의 결과로서 모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었을 때 그 행위가 옳다고 평가하는 입장이므로, 사실상 '공리주의 = 결과주의'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2) 공리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 중 하나는 그것이 '정의'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 상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공리주의에 따르면 엄청난 살상이 예견되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그보다 적은 수의 피해일 테지만 무고한 시민들이 사는 곳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용납될 뿐 아니라 택해야만 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우리의 직관에 의하면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 무고한 시민들이 사는 곳에 폭탄을 투하하는 행위는 소수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만, 전쟁을 멈춘다는 점에서 다수에게 그보다 더 큰 이익을 낳는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이는 '모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이다.

➡ 하지만 무고한 시민들이 사는 곳에 폭탄을 투하하는 행위가 과연 정의로운 행위가 될 수 있을까? 이렇듯 공리주의는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는다.

(가) 문단 2 규칙 공리주의

1) 일부 공리주의자들은 **행위 공리주의**에 가해지는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규칙 공리주의**를 제시하였다.

➡ 앞서 문단1에서 제시한 공리주의를 '행위 공리주의'라고 한정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공리주의를 소개하고 있다. '규칙 공리주의'는 정의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도 부합할 것이다.

2) 이는 규칙의 수용이 낳는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 규칙의 수용 여부를 정하고 수용된 규칙에 비추어 행위의 옳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행위 공리주의의 관점과 달리] '어떠한 경우에도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이 수용될 것인데, 이 규칙에 따른 행위가 옳다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부합한다.

➡ 규칙 공리주의가 행위 공리주의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칙 공리주의에 따르면 어떤 규칙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그 규칙을 수용한 결과가 공리주의에 비추어 도덕적으로 옳아야 한다. 즉 모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와,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모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후자이다.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키는 것이 허용된다면 언제든 자신이 희생당할 수 있는 만큼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이 수용될 것이다.

➡ 이렇게 규칙을 수용하였을 때, 그 규칙에 부합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가 된다. '무고한 시민들이 사는 곳에 폭탄을 투하하는 행위'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가 된다. 우리가 수용한 규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부합하는 것으로, 문단1–2)에서 제기된 행위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극복한 셈이 된다.

주목 ▲ 이렇듯 '규칙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의 결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대신에 어떤 규칙을 수용했을 때의 결과에만 관심을 둠으로써 새로운 공리주의를 정의하였다.

3) 그런데 규칙 공리주의는 공리주의가 개인에게 과도한 도덕적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온전히 답을 하지 못한다. 본래 결과주의는 세상을 모두에게 더 나은 곳이 되도록 하는 데에 도덕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 자율성을 침해받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즉 공리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언제든 새 신발을 사는 대신에 낡은 신발을 더 신고 그 돈을 한 생명을 살리는 데에 기부하여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일조해야만 한다.

➡ 다만 규칙 공리주의도 결과주의에 해당한다. 어떤 규칙을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그 규칙을 수용한 결과'를, 즉 모든 사람이 그 규칙을 따랐을 때의 결과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 행위 공리주의는 '도덕적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개인에게 과도한 도덕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을 비판받는다면, 규칙 공리주의는 '개인에게 과도한 도덕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만을 비판받는 셈이다.

(가) 문단 3 행위자 상대적 공리주의

1)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아마르티아 센**은 '행위자 상대성'을 도입한 **행위자 상대적 공리주의**를 제안한다.

➡ 행위자 상대적 공리주의는 '개인에게 과도한 도덕적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공리주의에 해당한다. '행위자 상대성'은 이를 이해하는 핵심 개념일 것이다.

2) 공리주의는 통상 행위자의 가치관이나 정체성 등이 행위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행위자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누구의 이익이든 동등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행위자 중립성'**을 가정하는데, ……

➡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와 같은 일반적인 공리주의는 '행위자 중립성'을 가정한다.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중요한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3) …… [행위자 상대적 공리주의는] 이 가정을 포기한 것이다.

➡ 행위자 상대적 공리주의가 '행위자 중립성'을 포기했다는 것은 곧 '행위자 상대성'을 도입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즉 행위자의 가치관이나 정체성 등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며, 행위자와의 관계에 따라 누군가를 특별히 달리 대할 수 있다고 본다.

4) 행위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행위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행위자 상대성**을 인정하면 혹여 더 많은 생명을 살릴 행위일지라도 후대에 영원히 비난받을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가령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탄을 투하하는 행위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부모나 자식, 친구들[→ 행위자와의 관계]에 대한 행위자의 특별한 의무도 인정될 수 있다.

➡ '행위자의 입장에서'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자.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일지라도 행위자에게는 나쁜 결과일 수 있다는 행위자 상대적 공리주의의 관점을 잘 보여 준다. 예컨대 전쟁을 멈추기 위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리는 일은 행위 공리주의에 따르면 옳은 일이지만,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옳은 일이 아닐 수 있다.

주목 ▲ 따라서 '행위자 상대적 공리주의'는 우리의 도덕적 직관[→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탄을 투하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에도 부합한다. 즉 규칙 공리주의와 행위자 상대적 공리주의는 모두 문단1–2)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다.

➡ 행위자의 입장을 중시하면 행위자와의 관계에 따라서는 특별한 의무도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범죄를 저지른 자식을 숨겨 주는 행위는 규칙 공리주의에 따르면 옳은 일이 아니지만, 행위자에게는 옳은 일일 수 있다.

5)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공리주의의 기본 취지에서 사실상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리주의나 의무주의가 아닌 제3의 이론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 애초에 행위자 상대성을 인정하는 순간 '모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문단1–1)]. 행위자 상대적 공리주의는 그 이름과 달리 공리주의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 여기서 의무주의는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지만 문장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공리주의'의 반대편에 놓이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무주의는 행위의 '결과'를 놓고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입장에 해당한다.

(나) 문단 1 묵자 사상의 공리주의적 성격

1) 약육강식의 시대에 살았던 묵자는 사회 혼란의 원인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하되 사람마다 차별을 두어 사랑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아울러 모두를 사랑함'을 뜻하는 **'겸애'**를 도덕 원리로 강조하고, 겸애의 실현 방법으로 '이익을 서로 주고받음'을 뜻하는 **'교리'**를 내세웠다.

➡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 '묵자'의 관점이다. '겸애'는 도덕 원리, '교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2) 이러한 겸애 교리 사상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사회 전체에 최대의 이익을 낳는 행위라는, 서양의 공리주의에 가깝다.

➡ 묵자의 사상을 앞서 (가)에서 설명한 공리주의와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모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하라.'라는 공리주의의 관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독해를 이어 나가자[(가)의 문단1–1)].

(나) 문단 2 맹자 사상의 공리주의적 성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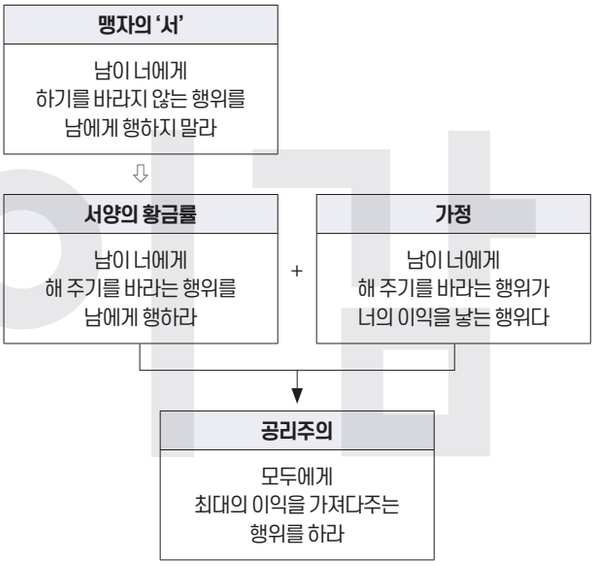
1) 흔히 맹자는 묵자에 대비되어 공리주의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곤 한다. 맹자가 묵자에 대하여 "그는 겸애를 주장하므로, 천하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그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비판한 대목[→ 결과만을 중시한다는 비판]이 그러한 해석의 근거이다.

➡ 천하에 이익이 되는 일을 '어떻게든지' 행한다는 것은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의 관점에 가깝다. 이렇게 '묵자 ≒ 공리주의'의 입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맹자는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그런데 맹자의 사상과 공리주의 간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맹자가 공자를 따라 도덕의 근본 원리로 내세우는 **'서'**의 원리는 "남이 너에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 행위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라는 원리로서 "남이 너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행위를 남에게 행하라."라는 서양의 황금률과 일맥상통한다. 이 원리에 우리가 상대로부터 바라는 행위가 나의 이익을 낳는 행위라는 가정이 덧붙여지면, 이는 공리주의와 다를 바 없다.

➡ 그런데 1)의 해석과는 달리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맹자가 '공리주의적 입장'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서'의 원리는 서양의 황금률과 일맥상통하는데, 여기에 지문에 제시된 가정을 더하면 공리주의와 같아진다. 내가 남이 바라는 행위를 해 주고 남 또한 내가 바라는 행위를 해 주면, 결과적으로 이는 모두의 이익을 낳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3) 실제로 맹자는 도덕적 마음인 **'측은지심'**의 사례로 우물에 빠진 아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겨 이를 없애고자 하는 마음을 든다. 측은지심은 고통의 부재라는 이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마음[→ 공리주의]인 셈이다.

➡ 맹자가 제시한 '측은지심' 역시 '모두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하라.'라는 의미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낸다.

맥락 잡기 ▲ 여기서 말하는 공리주의는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의 이익으로 본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입장을 중시하는 예외적 공리주의에 해당하는 '행위자 상대적 공리주의'와는 분명 거리가 있다[(가)의 문단3–4)].

(나) 문단 3 맹자 사상의 공리주의적 성격 (2)

1) 한편 맹자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도덕 규칙인 **'예'**에 따라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도, '예'가 절대적인 도덕 규칙이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는 이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예'는 맹자가 강조한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다. 다만 맹자가 '예'를 절대적인 도덕 규칙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따르는 것이 옳지 않다고도 보았기 때문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옥려자가 "예를 따르지 않고 먹고자 하면 먹을 것을 얻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데도 반드시 예를 지켜야 합니까?"라고 묻자, 맹자는 "예와 비교하여 먹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경우에 예를 차리지 않고 먹는 것이 어찌 옳다고 말하는 데 그치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 이렇듯 '예'를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옳을 수도 있다. 이는 곧 결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개별 상황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가 최대의 이익을 낳으면[→ 먹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경우에는, '예'를 지키지 않고 먹었을 때 최대의 이익을 낳는다.] 그것이 옳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3) 이러한 맹자의 태도는 도덕 규칙 그 자체가 이익에 대한 공리주의적 고려를 통해 정당화된다고 볼 뿐 아니라, ……

주목 헷갈리기 쉬우니 주의하자. '예'라는 도덕 규칙은 그저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예'가 정당화되는 것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따랐을 때의 결과가 더 좋기 때문이다. 이는 공리주의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 3)의 내용만 놓고 보면 맹자의 입장은 '규칙 공리주의'에 부합하는 것에 가까워 보인다. 만약에 규칙 공리주의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공리주의적 고려에 의해 수용된 규칙일 때, 그 규칙에 부합하는 행위라면 옳은 행위로 평가됐을 것이다.

4) …… 특정 상황에서 규칙에 따른 행위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규칙을 준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행위 공리주의와 유사하다.

➡ 그런데 맹자는 도덕 규칙을 수용하더라도 그것을 따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이는 개별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는 것인 만큼 '행위 공리주의'에 부합한다.

<보기> 분석

<보기> 문단

㉮ 행위의 결과를 매 상황마다 계산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특정 행위 규칙을 수용할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상상하는 일이 훨씬 쉬울 뿐 아니라 정확할 것이다.

➡ 행위의 결과를 매 상황마다 계산하는 것은 '행위 공리주의', 특정 규칙을 수용할 때의 결과를 상상하는 것은 '규칙 공리주의'에 해당한다. 즉 행위 공리주의보다 규칙 공리주의가 더 유리하다는 진술이다.

㉯ 동일한 종류의 행위일지라도 상황마다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한 사람은 매 상황에 적합한, 즉 해당 상황에서 최대의 이익을 낳는 행위를 선택할 것이다.

➡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고 있다. 이는 '행위 공리주의'를 지지하는 진술이다.

㉰ 모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친구의 이익과 낯선 이의 이익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자의 곁에는 친구가 없을 것인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 행위자의 특별한 입장을 고려하는 '행위자 상대성'에 대한 진술이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행위자 상대적 공리주의'이다.

㉱ 도덕 법칙은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법칙이다. 도덕 법칙의 정당성은 해당 법칙의 수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지에 의존하지 않는다[→ 공리주의 부정]는 것이다.

➡ 결과에 의한 정당화를 인정하지 않고 도덕 법칙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법칙으로 보는 관점이다. 공리주의와 대조되는 관점으로서 (가)의 문단3–5)에서 언급된 '의무주의'에 해당한다.

∴ 센이 ㉣에 대해 '행위자 상대성'을 근거로 동의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하지만 행위자 상대성은 행위자의 정체성에 따라 행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이 아니다. 행위의 결과는 행위자와 무관하게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다.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탄을 투하하는 행위의 결과가 행위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행위자 상대성'이란 행위자의 정체성에 따라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④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0~13] 사회

착오의 관점에 따른 오상 방위의 해석

지문 평가

지문의 초점은 오상 방위를 법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정당방위와 오상 방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된다. 글이 치밀하고 밀도가 높은, 공부하기에 좋은 지문이다. 자신이 많이 틀렸다고, 어렵다고 넘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더 공부할 때 실력은 비로소 는다는 점을 잊지 말자.

Keyword

사회 – 법학 – 정당방위, 오상 방위

정당방위, 오상 방위,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착오,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형법 제13조, 고의범, 과실범, 형법 제16조

문단 1 정당방위와 오상 방위

1) 자기 또는 타인에게 가해지는 급박하면서도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침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취하는 가해 행위를 **정당방위**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막고자 침해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침해자 입장에서는 가해를 당하는 것임에도, 정당방위는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2) 그런데 밤길에 마주친 사람을 강도로 잘못 알고 다치게 한 것처럼 정당방위의 상황이 아닌데도 행위자가 그런 상황으로 오인하고 방위하는 행위인 **오상 방위**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할까?

➡ 반면 '오상 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님에도 정당방위라고 오인하여 상대방을 가해하는 상황이다. 정당방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오상 방위에 대해서도 과연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맥락 짚기 지문을 관통하는 핵심 물음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글을 읽어 나가자.

문단 2 범죄 성립 요건과 착오

1)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형법의 조항에 금지된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고 한다.

➡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 가기에 앞서 범죄가 성립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문단1–1)에서 언급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관련이 깊다. 다음과 같은 생각의 흐름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 정당방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한다.
> ⇩
> 정당방위는 그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 ⇩
> 오상 방위도 어떤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야만 행위자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 첫 번째는 '구성 요건 해당성'이다. 쉽게 말해서 형법의 조항에서 그것을 금하고 있어야 한다.

2) 다만 형법에 규정된 금지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전체 법질서를 중시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조각하고 처벌하지 않을 때도 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대표적인 경우로, 이는 '법이 부당한 침해와 같은 불법을 용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 원칙적으로 '구성 요건 해당성'을 충족하면 '위법성'도 충족한다[→ 그렇다면 '구성 요건 해당성'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역시 범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구성 요건 해당성'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기도 한다. 정당방위는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주목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성 요건 해당성'을 충족하더라도 '위법성'을 충족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3) 이와 달리 오상 방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지만 ……

➡ 오상 방위는 분명 정당방위의 상황이 아니다[문단1–2)].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설명대로면 오상 방위에 대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전부 충족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4) ……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사실에 대해 오인한 것으로 착오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사안이다. **착오**란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로 나뉜다.

➡ 다만 오상 방위를 '착오'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오상 방위'란 주관적 인식[→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사실이라고 인식함]과 객관적 사실[→ 실제로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사실이 아님]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다.

5) **사실의 착오**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가는 것처럼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인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

➡ '사실의 착오'는 구성 요건 해당성과 관련이 있다[문단2–1)].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는 분명 형법의 조항에 금지된 행위로 구성 요건 해당성을 충족한다. 그러나 주관적으로는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사실의 착오'이다.

6) …… **법률의 착오**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련 법령을 잘 몰라서 건물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처럼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인 위법성 인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 '법률의 착오'는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는 위법함에도 스스로 그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객관적 사실	'구성 요건 해당성'을 충족하는 행위	'위법성'을 충족하는 행위
주관적 인식	충족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인식	

문단 3 사실의 착오에 따른 오상 방위

오상 방위는 두 가지 착오의 성격을 모두 지니며, 이를 어떤 착오로 보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 행위의 사실 관계에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상 방위는 사실의 착오에 가깝다. **형법 제13조**는 행위자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인 고의를 지니고 있을 때에만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상 방위를 사실의 착오로 보면 고의성이 배제되므로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해 과실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먼저 오상 방위를 '사실의 착오'로 해석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구성 요건 해당성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사실의 착오'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배제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는 있다.

주목 ▲ 문단1-2)의 물음과 관련하여, 오상 방위에서의 착오를 '사실의 착오'로 해석할 경우에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문단 4 법률의 착오에 따른 오상 방위

1) 이와 달리 오상 방위에서의 착오는 그 착오가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실의 착오와는 다르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오상 방위는 상대가 강도이든 아니든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상태 등과 같이 위법성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이번에는 오상 방위를 '법률의 착오'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문단1-2)의 예시를 보면 정당방위는 밤길에 마주친 사람이 실제로 강도인 경우였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그래야만 부당한 침해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 반면 오상 방위는 상대방이 실제로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오상 방위는 상대가 강도가 아니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위법성이 있는 행위인데 [→ 객관적 사실],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라고 잘못 인식한 경우이므로[→ 주관적 인식]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이 입장에 따르면 오상 방위는 법률의 착오를 규정한 **형법 제16조**에 의해 행위자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 이렇듯 오상 방위에서의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에 한하여 행위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

➡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도 챙겨야 한다.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더라도 책임이 조각되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참고 ▼ 형법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등 세 가지 요건을 '전부' 충족해야만 한다.

3) 이때의 정당한 이유란 착오의 회피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보통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를 회피할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아서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상 방위도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이유로 책임을 조각할 수 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 2)의 '정당한 이유'란 위법성 인식의 가능성이 없었던 상황을 가리킨다. 쉽게 말해서 위법성을 충족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위법성이 없을 것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한하여 책임을 조각한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되어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주목 ▲ 문단1-2)의 물음과 관련하여, 오상 방위에서의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해석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의 경우를 이렇게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당방위		위법성 조각 ⇨ 범죄 성립 ×
오상 방위	사실의 착오	고의성 배제 ⇨ 고의범으로 처벌 × [→ 예외적으로 과실범으로 처벌]
	법률의 착오	정당한 이유 ⇨ 책임 조각 ⇨ 범죄 성립 × 정당한 이유 × ⇨ 고의범으로 처벌

문단 5 오상 방위의 정당방위 인정

오상 방위는 본래 행위자의 내면적 요소와 관련되므로 그 법적 판단이 쉽지 않다. 그래서 행위자가 정당방위의 필요성을 믿은 것이 합리적이라면 설령 그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도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어, 오상 방위의 착오를 별도로 논의하지 말고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만 가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오상 방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것으로 보고 이를 착오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문단3, 4까지의 논의였다.

➡ 그런데 문단5는 오상 방위를 아예 정당방위로 간주하자는 입장으로, 앞선 논의와 완전히 다른 접근이다. 이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문단1-1)].

<보기> 분석

<보기>문단

갑은 불심 검문을 하는 경찰관 을을 폭행하여 공무 집행 방해죄로 고소되었다. 법원에서 갑은 사복 차림의 을이 자신의 앞을 승용차로 가로막는 등 그 행위가 경찰관의 직무 집행으로 보기 어려웠으며, 상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위 차원에서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의 판결을, 2심에서는 ㉡의 판결을 내렸다.

➡ '갑'은 자신이 방위 차원에서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곧 정당방위가 아니지만 정당방위가 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즉 어쩔 수 없는 방위였다는 주장이다.

㉠ 사후적으로는 정당방위의 상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행위 당시에 갑이 정당방위의 필요성을 믿은 것이 합리적이므로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1심의 판결이다. 위법성이 조각되었다는 것은 갑의 오상 방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였다는 뜻이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문단5에서 언급된 '판례'와 일치하기도 한다.

주목 ▲ 이를 '사실의 착오'로 보았다면 갑에게 고의가 없음을 근거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겠지, 위법성의 조각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 갑이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을 불러 달라고 외친 점을 고려하면 갑은 자신의 방위를 위해 을을 폭행해도 된다고 오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을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찰관임을 고지했으므로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2심의 판결이다. '정당한 이유'를 따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갑의 오인을 '법률의 착오'[→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였지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로 해석하는 입장이다.

➡ '법률의 착오'에서는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조각한다. 그런데 2심은 갑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즉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③번 선지가 적절하다. ㉡은 오상 방위를 '법률의 착오'로 해석하되,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책임을 조각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법률의 착오에서는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고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문단4-3)]. ㉠은 오상 방위도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착오에 대해서는 고려할 이유가 없어서, 책임의 조각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할 이유가 없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4~17] 과학

세균의 항생제 내성 및 박테리오파지에 의한 내성 전파

지문 평가

박테리오파지와 구분되는 항생제의 원리와 그에 맞서 세균이 내성을 획득하게 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문 자체는 읽기 무난한 편이지만, 핵심 개념인 '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선지에서 묻는 바를 명확히 처리하기 어렵게끔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 충분히 생각하며 독해하는 훈련을 해 보자.

Keyword

과학 – 생리학 – 내성, 박테리오파지

세균, 항생제, 박테리오파지, 내성, 포도상 구균, 세포벽, 펩티도글리칸, 페니실린 결합 단백질(PBP), 펩타이드, 메티실린, 메티실린 내성 유전자(mecA), PBP2A, 반코마이신, 반코마이신 내성 유전자(vanA), 젖산

문단 1 항생제와 박테리오파지

1) 병원성이 있는 **세균**은 체내에서 증식하면서 조직을 괴사시키거나 물질대사에 이상을 유발하는 등 감염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세균에 감염된 인체에는 세균의 보편적 특성을 무력화시켜서 세균들을 파괴하거나 그 증식 속도를 늦추는 약제인 **항생제**를 투여하는데, ……

➡ 감염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대상으로는 주로 '항생제'를 사용해 왔다.

2) ……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특정 세균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박테리오파지**가 자연에서 발견된 경우 이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 특정 박테리오파지는 특정 종류의 세균만을 감염시켜서 사멸을 유도하는 바이러스이다.

➡ 항생제와 박테리오파지를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항생제와 달리 박테리오파지는 인공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며, 자연에서 발견되는 바이러스이다.

➡ 왜 항생제를 박테리오파지에 비해 선호해 왔는지 여기서 알 수 있다. 항생제는 세균의 보편적인 특징을 무력화한다. 따라서 하나의 항생제로 더 많은 유형의 세균들을 억제할 수 있기에 효율적이다. 반면 박테리오파지는 특정 종류의 세균에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다.

항생제	박테리오파지
인공적으로 개발	자연에서 발견
일반 세균에 보편적으로 작용	특정 세균에만 개별적으로 작용

3) 그런데 세균은 수없이 많은 증식을 거듭하면서, 인체에 반복 투여되어 온 항생제나 특정 박테리오파지에 대해 저항하여 그 효과를 무력화하는 **내성**을 지닐 수 있다.

➡ 그러나 세균도 이들에 저항하여 살아남는 내성을 갖기도 한다. 기존의 항생제나 박테리오파지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맥락 잡기 이번 지문의 초점은 세균이 항생제나 특정 박테리오파지에 대해 지니는 내성의 원리,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 방안 정도가 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문단 2 메티실린 내성

1) 병원성이 강한 **'포도상 구균'**은 보통의 세균들과 마찬가지로 **세포벽**을 보호막으로 갖는다.

➡ 세균 중에서도 '포도상 구균'을 중심 예시로 삼아 설명하려고 한다. 대부분의 세균이 그러하듯 포도상 구균도 '세포벽'을 지니고 있는데……

맥락 잡기 세포벽의 형성을 항생제가 어떤 식으로 무력화하는지, 이에 대한 세균의 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자.

2) 세포벽은 당과 아미노산 사슬로 이루어진 구조물인 **펩티도글리칸**으로 형성된 것이며, 이 펩티도글리칸은 세균에서 **페니실린 결합 단백질(PBP)**이 짧은 아미노산 사슬인 **펩타이드**들을 재료로 하여 생성한 것이다.

➡ 항생제는 이처럼 세균의 보편적인 특성을 무력화함으로써 세균을 억제한다[문단1-1)]. 일종의 보호막에 해당하는 세포벽이 형성되지 않으면 해당 세균도 정상적인 증식이 어려울 것이다.

3) **메티실린**은 이와 같은 유형의 세균들에 작용하는 항생제로, PBP에 결합한 뒤 펩티도글리칸의 생성을 방해하여 포도상 구균의 사멸을 유도한다.

➡ 정상적인 포도상 구균이라면 PBP가 펩타이드를 재료로 하여 펩티도글리칸을 생성한다. 그러나 '메티실린'은 PBP에 결합하여 그 작용을 방해한다. 항생제로 인하여 세균의 보편적 특성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4) 그런데 증식을 거듭하면서 유전적 변이 등의 요인으로 **'메티실린 내성 유전자(mecA)'**를 획득한 포도상 구균이 등장하였다. 자신의 DNA에 mecA가 포함된 포도상 구균의 경우 PBP 대신에 그와 동일한 기능을 하되 구조가 미세하게 달라서 메티실린이 결합하지 못하는 단백질인 **PBP2A**를 합성한다.

➡ 그러나 메티실린을 반복 투여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내성을 지닌 세균이 등장하였다. 메티실린 내성 세균은 PBP 대신에 PBP2A로 하여금 세포벽을 형성하도록 한다. 메티실린은 본래 PBP에 결합할 수 있는데, 세균 내에 PBP가 없는 만큼 더 이상 세포벽 형성을 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메티실린		메티실린 내성 유전자
PBP에 결합 세포벽 형성 억제	↔	PBP 대신 PBP2A 합성 메티실린 결합 ×

➡ 4)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 세균은 DNA를 갖는다.
- 세균의 DNA가 달라지면 새로운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 세균의 DNA는 유전적 변이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문단 3 반코마이신 내성

1) 메티실린에 대해 내성을 지닌 포도상 구균이 흔해짐에 따라 또 다른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이 그 대체재로 사용되어 왔다. **반코마이신**은 메티실린과 마찬가지로 세균의 세포벽 형성을 억제하지만, PBP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펩타이드의 끝부분에 결합함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한다.

➡ 메티실린 내성 세균이 흔해짐에 따라 새로운 항생제 '반코마이신'이 개발되었다. PBP에 결합하는 대신 펩타이드의 끝부분에 결합함으로써 세포벽 형성을 억제한다.

2) 그런데 최근에는 반코마이신에 대해 내성을 띠는 포도상 구균도 발견되었다. 그 내성은 장내 구균으로부터 전해진 **'반코마이신 내성 유전자(vanA)'**로 인해 나타난다. 자신의 DNA에 vanA가 포함된 포도상 구균의 경우 세포벽을 만들 때 펩타이드를 재료로 사용하는 대신에 분자 구조가 달라서 분자의 끝부분이 아미노산이 아니라 **젖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 메티실린 내성 세균이 PBP 대신에 PBP2A를 합성하였다면, 반코마이신 내성 세균은 펩타이드 대신에 '끝부분이 젖산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합성한다. 메티실린이 PBP2A에 결합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물질에는 반코마이신이 결합할 수 없어서 세포벽이 정상적으로 형성된다.

반코마이신	↔	반코마이신 내성 유전자
펩타이드 끝부분에 결합 세포벽 형성 억제		해당 끝부분을 젖산으로 구성 반코마이신 결합 ×

문단 4 박테리오파지에 의한 항생제 내성 전파

1) 이렇게 특정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지닌 포도상 구균들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뿐 아니라 또 다른 해결책도 요구되고 있다.

➡ 포도상 구균의 사례처럼 특정 항생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해당 항생제에 내성을 지닌 세균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듯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항생제 이외의 해결책이 필요해지고 있다. 지문의 초점이 전환되는 대목이다.

2) 특히 자연에서 발견된 다양한 박테리오파지들이 어떤 세균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지가 확인되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나, 이미 형성된 항생제 내성이 박테리오파지에 의해 보다 많은 세균들에 전파될 우려도 있다.

➡ 그에 따라 이전에 사용되었던[문단1-2)] 박테리오파지를 다시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충분히 많은 박테리오파지가 발견된 시점이니 다양한 세균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백 개의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하면 수백 종류의 세균에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그런데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하면 오히려 원래 의도와는 반대로 '항생제 내성'이 다른 세균들에 전파될 위험이 있다.

3) 박테리오파지는 자신의 유전 정보에 해당하는 DNA를 단백질 껍질로 감싼 단순한 형태를 띠며, 스스로 증식하지 못한다. 그 대신에 세균이 지닌 특정 수용체에만 결합하여 자신의 DNA를 세균 내부에 침투시킨다. 침투된 DNA는 세균의 소기관에 의해 복제되어 새로운 박테리오파지들로 증식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균의 DNA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어 세균의 증식이 차단된다. 박테리오파지가 충분히 증식되면 이들은 세균을 사멸시키고 외부로 방출된다.

맥락 짚기 2)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박테리오파지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박테리오파지는 세균과 마찬가지로 DNA를 갖는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의 특정 수용체에 결합한 뒤[→ 따라서 인체의 세포에는 무해하며, 특정 종류의 세균에만 결합할 수 있다.] 자신의 DNA를 침투시켜 해당 세균으로 하여금 자신을 증식시키도록 한다.

세균의 특정 수용체에 결합
⇩
박테리오파지의 DNA 침투
⇩
세균 소기관에 의한 DNA 복제
⇩
새로운 박테리오파지 증식[→ 세균의 DNA는 분해]
⇩
증식된 박테리오파지 방출[→ 세균 사멸]

➡ 이때 감염된 세균의 DNA는 분해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세균은 스스로를 증식하지 못한다.

4) 그런데 방출되는 박테리오파지들 중에는 자신의 DNA 대신에 세균의 DNA 조각을 품고 있어서 세균을 감염시켜도 자신이 증식되기 힘든 것들이 존재한다. 만일 그렇게 품고 있는 세균의 DNA 조각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박테리오파지의 감염에 의해 다른 세균에 그 내성 유전자가 전파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 박테리오파지가 증식되는 과정에서 박테리오파지의 DNA 대신 분해된 세균의 DNA 조각이 단백질 껍질에 담기기도 하는데, 그중에는 mecA, vanA와 같은 내성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 어떤 새로운 박테리오파지에 mecA가 담겨 있다고 하자. 해당 박테리오파지가 메티실린에 대한 내성을 지니지 않은 어떤 세균을 감염시킨다면, mecA가 해당 세균의 DNA에 포함된다. 즉 메티실린 내성 세균이 되는 것이다.

➡ 결과적으로 세균은 항생제 내성을 유전적 변이가 아닌[문단2-3)] 박테리오파지에 의해서도 얻을 수 있다. 2)에서 제기되었던 박테리오파지를 활용한 방안의 문제점이다.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안으로 박테리오파지를 활용한 방안이 가장 적극적으로 동원되고 있다. 다만 항생제와 마찬가지로 세균은 특정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내성을 지니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세균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수십 종류의 박테리오파지를 결합하여 한 번에 투입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18~21] 고전시가

(나) 「십육영」

– 권섭 –

수록 지문 평가

「십육영」은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 산, 시냇물, 강, 바다, 신선, 용, 호랑이, 학, 사람, 잉어, 말, 매 등 16개의 소재를 각 수에서 하나씩 다룬 전체 16수의 연시조이다. 사대부의 시가에서 흔히 소재로 삼았던 사군자류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대상을 소재로 삼은 점이 특징인데, 그러한 소재에 대한 진술을 통해 당대 현실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태도를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제1수 소나무

구렁(= 움푹하게 파인 땅)에 섰는 나무 우뚝하기도 하구나

풍상(= 바람과 서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을 실컷(= 아주 심하게) 겪고 독야청청(獨也靑靑, 홀로 푸른빛을 지키고 있다는 뜻으로,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하였구나

➡ 〈제1수〉의 시적 대상은 소나무이다. '구렁'은 '나무'가 우뚝하게 서 있기 어렵게 하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풍상'은 '나무'가 생기 있는 푸른빛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나무'에게 주어진 역경을 나타낸다. 화자는 그러한 역경[→ '구렁', '풍상'] 속에서도 '우뚝'하고 '독야청청'한 '나무'의 곧고 변함없는 기상에 감탄하고 있다.

저근덧(= 잠시) 베지 말고 두면 동량재(棟梁材, 대들보로 쓸 만한 재목)되리로다

➡ 이 '나무'를 베지 말고 잠시만 그대로 두면 대들보로 쓸 만한 훌륭한 재목이 될 것이라는 종장의 말은, '나무'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나무'를 성급하게 베지 말라는 당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참고 작품의 창작 배경인 당대의 어지러운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나무'와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나라에 중요하게 쓰이지 못한 채 화를 입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포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제9수 신선

구름 밖에 학 타신 분[→ 신선]네 한가하도 다니실사

수궁 패궐(水宮貝闕, 진주나 조개 등으로 호화롭게 꾸민 물속의 궁전)에 피리 소리 더욱 좋네

➡ 〈제9수〉의 시적 대상은 신선이다. 중장 역시 초장과 마찬가지로, 신선이 누리는 초월적 세계의 흥취를 표현하고 있다.

저근덧 하계(下界, 천상계에 상대하여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이르는 말)를 보소서 우스운 일 많소이다

➡ '하계'는 화자가 속한 인간 세상을, '우스운 일'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제9수〉는 종장에서 시상이 전환되어, 초중장에 그려진 초월적 세계의 한가로운 흥취와 대조되는 '하계'의 부정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제12수 학

맑은 밤에 낭랑한 소리 먼 하늘에서 들리노니

벽해 요공(碧海遙空, 푸른 바다와 아득한 하늘)에 언제나 돌아가리

➡ '맑은 밤'과 '낭랑한 소리'가 어우러져, 맑고 청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중장은 바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적 대상인 학이 느끼는 '벽해 요공'에 대한 그리움과 탄식을 나타내고 있다. '먼 하늘에서' 들려오는 '낭랑한 소리'가 그 '먼 하늘'로 귀환하고 싶다는 마음을 더욱 절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엇더타 월하(月下)에 홀로 서서 긴 깃을 다듬느냐

➡ '긴 깃을 다듬'는 학의 행동은, '벽해 요공'으로 날아서 돌아가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장에 나타나 있듯이 돌아갈 기약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종장에 나타난 학의 모습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세계에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하며 스스로를 다잡아 깨끗이 하려는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작품의 배경을 참고하고 〈제12수〉의 시적 대상인 학을 작가의 분신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혼란한 세상을 등지고 지조를 지키려 하는 작가의 태도를 빗대어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5수 말

오리마(烏驪馬, 매우 빠른 말을 이르는 말) 적표마(赤驃馬, 매우 빠른 말을 이르는 말)들이 관단(款段, 느리고 둔한 말을 이르는 말) 노태(駑駘, 느리고 둔한 말을 이르는 말) 같을쏜가

➡ '오리마 적표마'를 '관단 노태'와 대비하고 있다.

바람에 길게 울며 네굽을 허위 치니

➡ '오리마 적표마'가 얼른 출발하고 싶어서 히힝 울며 발길질을 해 대는 것이다.

아무리 천리지(千里志, 천 리를 달려갈 뜻) 있은들 알 이 없어 설워라

➡ '오리마 적표마'는 천 리를 달려갈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럽다는 것이다.

참고 작품의 창작 배경을 참고한다면 〈제15수〉의 시적 대상인 말들[→ '오리마 적표마']을 작가의 분신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당대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관직에서 정치적 포부를 펼치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작가의 아쉬움을 빗댄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해와 감상

작가는 숙종 때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관직 진출을 포기하고 전국의 명승지를 두루 다니며 다수의 문학 작품을 창작한 사대부이다. 숙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여러 당파에게 번갈아 권력을 몰아주었는데, 이로 인해 당쟁이 격화되고 정권 교체 때마다 대규모의 숙청이 일어났다. 권섭은 가까운 인물들이 목숨을 잃거나 유배에 처하는 것을 보고, 관직에 나아가 절개를 지키지 못하면 가문을 더럽히게 되고 절개를 지키려 하면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세상이기에 과거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2~27] 현대시

(나) 「저문 강에 삽을 씻고」 – 정희성 –

작품 평가

1970년대 노동 현실을 다룬 작품인데, 이를 넘어서는 보편적 인생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서 오늘날에 읽어도 나름 울림이 있다.

토막 1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설의적 표현]
우리가 저[→ 물]와 같아서

➡ 흐르는 것이 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흔히 시간이나 인생을 흐르는 것에 비유한다.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도 강물처럼 그저 흘러간다는 것이다.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 화자는 삽질하는 사람, 막노동꾼이다. 하루 일을 마치고 강변에서 삽[→ 노동 도구]을 씻으며 그날 하루의 슬픔[→ 육체적 고단함, 생계에 대한 걱정]을 삽으로 모래를 푸듯이 퍼다 버린다.

토막 2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보며

➡ '스스로 깊어' 간다는 것은 '저절로 흘러가는' 또는 '자기 내면으로 침잠하는' 의미로 읽힌다. 또한 날이 저물어 물빛이 어둡게 짙어 가는 시각적 인상을 표현한 것으로도, 강이 바다 쪽으로 흘러가면서 [자연법칙에 따라] 조금씩 수심이 깊어져 가는 현상을 표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 '담배나 피우고'라고 되어 있지만, 화자는 강이 깊어 가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성찰에 잠기고 있다. '담배나'의 조사 '나', '돌아갈 뿐이다'의 의존 명사 '뿐'은 모두 화자의 무력감을 드러내는 조사이다.

토막 3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노동자로 살아온 인생의 고달픔을 환기]

➡ 담배를 피우면서 하는 성찰의 내용이 이어진다. 문득 자신의 일생을 생각해 보니, 어느덧 노동을 하면서 한 생애가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허무감이 느껴지기도 한다.

샛강 바닥 썩은 물에[→ 화자의 암울한 현실 인식]
달이 뜨는구나

➡ 토막4와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달'은 반복과 순환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으며 매일 뜨는 '달'을 통해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사는 노동자들의 삶의 주기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 이를 '썩은 물에도 때가 되면 달이 뜬다'로 읽고, '달'을 희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썩은 물' 위에 뜬 '달'은 암울한 삶 속에서 가져 보는 희미한 희망 정도일 것이다.

토막 4

우리가 저[→ 달]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달'을 희망이 아니라 반복과 순환의 이미지로 본다면,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암울한 삶이 개선되지 않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냄으로써 노동자의 비애감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은 화자의 가난한 처지를 나타내는데, '사람들', '마을'이라는 표현을 통해 개인이 아닌 계층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